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업체명	소재지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위반내용	처분일자
(주)만드림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8 일번지프라자 304호 (블로동)	금속·창호·지붕· 건축물조립공사업 인천강화2011-07-02	과태료 1,000,000원 (2026.5.20. 납부)	건설공사대장공사 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「건설산업기 본법」제22조제6항9 9조 3호	2026.5.29.
주식회사비제이산업	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116번길 11 (원창동)	금속·창호·지붕· 건축물조립공사업 인천연수03-08-08	과태료 1,500,000원 (2026.5.12. 자진납부)	건설공사대장공사 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「건설산업기 본법」제22조제6항9 9조 3호	2026.5.29.
신진산업	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54번길 11-14 (가좌동)	기계설비·가스공사 업 인천서구2004-12-01	과태료 1,000,000원 (2026.5.18. 자진납부)	건설공사대장공사 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「건설산업기 본법」제22조제6항9 9조 3호	2026.5.29.
주식회사세화기연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88번 길 26 322호 (청라동)	기계설비·가스공사 업 인천서구2023-파-06	과태료 5,500,000원 (2026.5.22. 자진납부)	건설공사대장공사 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「건설산업기 본법」제22조제6항9 9조 3호	2026.5.29.